

지배구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주,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집행임을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기타비상무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집행임원"이란 전무, 상무, 상무대우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최고경영자"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규정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법령 개정,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어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사 및 이사회

제1절 이사회 의 구성현황

제5조(이사회 의 구성)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 의장) ①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 의 의 소집 및 주재

지배구조규정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③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④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①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내지 제6조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 ①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금융, 보험 등의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회는 각 이사 및 집행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의결·보고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규정

5. 내부통제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임)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로써 대표이사 또는 각종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

②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사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이사회에서는 회장, 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④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후보의 추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지배구조규정

④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종료한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이사의 퇴임 및 보선) ①이사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 상의 퇴임사유에 해당한 경우 퇴임한다.

②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발생시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해야 한다.

④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 방법

제17조(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회의자료를 회의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발송할 수 있다.

제18조(의결방법) ①이사회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과 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책임자의 해임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②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 의 성립정족수인 과반수 출석에 포함되나 의결 정족수인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의결로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제19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운영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참고한다.

②전항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

제20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관련 세부절차는 각 위원회규칙을 따른다.

제2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기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칙을 따른다.

제22조(감사위원회) ①감사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하 상근감사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③감사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④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 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⑤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지배구조규정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관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6. 현지법인에 대한 조사
 7.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⑥기타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규칙을 따른다.

제23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리스크관리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②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요사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리스크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리스크관리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감독 및 정책수립 등 리스크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칙을 따른다.

제24조(보수위원회) ①보수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②보수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체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기타 보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수위원회규칙을 따른다.

제25조(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운영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②전항의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및 권한·책임

제2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다.

②집행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지배구조규정

③상근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단, 회사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상근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④준법감시인은 원활한 준법감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리스크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7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른다.

②상근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현지법인에 대한 조사
3.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임면 동의
4.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
7. 기타 내부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③집행임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자의 구체적인 직무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무는 전무이사의 직무에 준하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사무(社務)를 분장한다.
2. 상무는 상무이사의 직무에 준하며 대표이사 및 전무를 보좌하고 사무(社務)를 분장한다.
3. 상무대우는 상무의 직무에 준하며 대표이사, 전무 및 상무를 보좌하고 사무(社務)를 분장한다.

④전항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집행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⑤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2.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 점검, 조사 및 보고
3. 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4.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5. 내부통제규정 준수 감시 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고
6.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7.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8. 자금세탁방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9.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업무

⑥리스크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며,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지배구조규정

또한 회사의 리스크 현황을 최고 경영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보고 함으로써 경영전략이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한다.

제2절 임원의 선임 및 퇴임

제28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다.

- ②상근감사위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③집행임원은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④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다.

- ②상근감사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③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임기 종료일은 집행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④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퇴임) ①이사의 퇴임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 ②상근감사위원의 퇴임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 ③집행임원을 임기중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2.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사임
 - 4. 기타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⑤회사는 내부통제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준법감시인이 해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이사회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 ⑥리스크관리책임자의 퇴임 및 후임자 선임에 대해서는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1조(임원에 대한 교육) 회사는 임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현황 등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집합교육 또는 외부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배구조규정

제32조(후보자에 대한 교육) 사내 임원후보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조를 준용하며, 임원 선임 시 연수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 지급의 방법

제33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임원(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성과평가는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전항의 성과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는 성과보수의 지급에 반영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등) ①임원의 보수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과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금원인 성과보수를 말한다.

②임원 보수의 결정,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은 이사회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제1절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제35조(최고경영자 자격요건) ①최고경영자는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여야 한다.

②최고경영자는 금융 및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당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건전 경영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혁신적 마인드 등을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제36조(지원팀) ①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의 지원팀은 기획실로 정한다.

②기획실은 경영승계 지원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2.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지배구조규정

③기획실은 매년 1회 이상 전항의 업무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등

제37조(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한다.

②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제38조(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시점에 맞추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가 임기 도중에 사의를 표명하거나 회사의 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영승계 절차 개시시점에 기획실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경영승계 절차) ①이사회는 경영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조의 경영승계 개시시점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최종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회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후보자 선정 시한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연사유, 대행자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40조(비상상황시 경영승계) ①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 이사회는 지체 없이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②전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는 제38조 내지 제39조를 준용하되,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한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제41조(후보 추천 절차 등)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5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로 추천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과정에서 주주, 이해관계자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

지배구조규정

제42조(최고경영자 후보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까지 다음 호의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후보자 추천이유
6. 후보자의 경력

제5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3조(최고경영자의 임면 등) ①최고경영자의 임면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②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면 과정에서 제33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 ③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임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최고경영자는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최고경영자의 역할 등) ①최고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다.

- ②최고경영자의 권한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2016.10.28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